
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주요 Q&A

2022. 6.



중소벤처기업부

목 차

I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주요변경 사항

1. 2021년 4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? 1
2. 중소기업 전부가 아니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까지만 보상하는 이유는? 2
3. 2021년 4분기 또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경우,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? 2

II 보상대상

4.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? 3
5.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? 3
6.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? 3

III 보상금 산정

7.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 4
8.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 5
9.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? 6
10.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? 6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1.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? | 7 |
| 12.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? | 7 |
| 13. 종합소득세 기장신고를 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, 영업 이익률 또는 고정비 비중이 어떻게 계산되는지? | 7 |
| 14. '20년 이후 개업하여 '19년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 | 8 |
| 15.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2019년으로 하는지? | 8 |
| 16. 보정률을 100%로 상향한 이유는? | 8 |
| 17.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? | 9 |
| 18. 보상금의 상·하한액은? | 9 |
| 19.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? | 9 |
| 20.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한데 업종만 변경되었다면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? | 9 |
| 21. 인건비 및 임차료에 해당하는 세부 비용 항목은? | 10 |
| 22.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? | 10 |

IV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23.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 | 11 |
| 24.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? | 12 |
| 25. 2020년 개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순연되는 이유는? | 13 |
| 26.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 | 13 |
| 27.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 가능한지? | 13 |
| 28.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변경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에 대해 각각 보상금을 신청 가능한지? | 14 |

- 29. 폐업한 경우,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? 14
- 30.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손실보상금을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지?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는지? 14
- 31. 법인사업자 본점과 지점의 매출규모가 다른 경우 기업규모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? 15

V 기타

- 32.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는? 16
- 33.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? 16
- 34.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? 17
- 35.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되는지? 17
- 36.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시 업로드할 수 있는 첨부파일 유형은 무엇인지? 17

I

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주요변경 사항

1. 2021년 4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?

- '22.1분기에는 그간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의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상대상이 확대되고 보상수준은 강화됩니다.
- ① '21.4분기까지는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만 보상대상이었으나, '22.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.
- ② 정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인 보정률은 90%에서 100%로 상향되어, 방역조치 이행기간의 손실을 전부 보상합니다.
- ③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| 구 분 | |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|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상대상 | | 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,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·소기업 | 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,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·소기업 및 중기업(연매출 30억원 이하) |
| 방역조치 이행기간 | | 2021년 10월 1일 ~ 12월 31일 | 2022년 1월 1일 ~ 3월 31일 |
| 보상금 산정 방식 | 산식 | ■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| 좌동 |
| | 매출액 추정 | ■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, 지역·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| 좌동 |
| | 보정률 | 90% | 100% |
| | 상한액 | 1억원 | 좌동 |
| | 하한액 | 50만원 | 100만원 |
| 기타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손실보상금 정산금액 상계 ■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좌동 □ 선지급금* 공제 <p>* 신청인 본인이 수령했던 선지급액 (500만원 또는 250만원) 및 '21.4분기 보상대상 여부에 따라 금액 상이</p> |

2.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만 보상하는 이유는?

- 「소상공인법」상 의무 보상대상은 소상공인*이지만 코로나19 및 방역 조치 장기화로 중기업 손실도 상당히 누적된 점을 고려, '22.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.

*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결과에 따라 '21.4분기까지는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 보상

3. 2021년 4분기 또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경우,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?

- '21.4분기 및 '22.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, ①'21.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되며, ②공제 후 선지급금 잔액은 '22.1분기 보상금에서 다시 공제됩니다.

< 선지급금 공제 이후 지급 사례 >

| 구분 | 2021년 4분기 | | 2022년 1분기 | |
|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선지급금 | 실제 산정액 | 선지급금 | 실제 산정액 |
| A | 250만원 | 300만원 | 250만원 | 400만원 |
| B | 받지 않음 | 300만원 | 250만원 | 350만원 |

- ☞ A는 '21.4분기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고, (선지급 잔액 : 200만원) '22.1분기 보상금으로 200만원(=400-200)을 지급받습니다.
- B는 '21.4분기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았고, '22.1분기 보상금으로 100만원(=350-250)을 지급받습니다.
- '22.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 잔액 발생 시, 해당 잔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% 초저금리 용자로 전환됩니다.

II

보상 대상

4.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?

-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(▲집합금지, ▲영업시간제한, ▲시설인원 제한)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.
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·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5.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?

- 해당 사업장이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·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,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확인요청 대상입니다.
-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6.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?

- 사업장 이전 증빙을 위해 사업장의 前·現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손실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III

보상금 산정

7.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

- 손실보상금은 '21.3~4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, ①월별 일평균 손실액, 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, ③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
<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>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일평균 손실액 | |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| | 보정률 (100%) |
|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(2019년 영업이익률 +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+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) | × | | × | |

-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'19년 대비 '22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'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 -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사업자가 '22.1분기 중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·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인된 기간입니다.
 - 보정률은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,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'22.1분기부터 100%로 상향하였습니다.
-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 1억원, 하한 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.
 -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'22.1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*하였습니다.

* ('21.3분기) 10만원 → ('21.4분기) 50만원 → ('22.1분기) 100만원

8.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

<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>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손실액 | × |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| × | 보정률 (100%) |
|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(2019년 영업이익률 +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+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) | | | | |

□ 일평균 손실액은 ①'19년 대비 '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②'19년 영업이익률과 ③'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.

①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'19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매출액*에서 '22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매출액을 뺀 값입니다.

* 현금영수증발급액, 신용카드결제금액,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, 전자계산서발급액, 전자지급거래액

- 과세인프라매출액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까지 고려하여 매출 감소액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도 활용합니다.
- '19년 또는 '22년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, 지역·시설 평균 통계값을 활용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합니다.

② 영업이익률은 '19년 매출액에서 '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, 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자료(이하 "소득세 신고자료")를 활용합니다.

- 개업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귀속연도의 신고자료가 반영됩니다.

| 개업 시기 | 소득세 신고자료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18년 이전 | 신청인의 '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|
| '19년 | 신청인의 '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|
| '20년 | 신청인의 '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|
| '21년 이후 | 신청인이 속한 업종의 '19년 귀속 단순경비율(국세청 고시) |

- 소득세 신고자료 부재시, '19년 단순경비율을 활용합니다.
(19년 귀속 경비율 고시)

- ③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은 '19년 매출액 대비 '19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으로,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.
- 개업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귀속연도의 신고자료가 반영됩니다.

| 개업 시기 | 소득세 신고자료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18년 이전 | 신청인의 '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|
| '19년 | 신청인의 '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|
| '20년 | 신청인의 '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|
| '21년 이후 | 신청인이 속한 업종의 '19년 귀속 단순경비율(국세청 고시) |

- 소득세 신고자료 부재시, '19년 업종 평균값을 활용합니다.
(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)

9.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?

-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.
 -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던 2019년도와 비교하여 산정된 영업이익(매출액-비용)의 감소분으로, 매출감소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
10.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?

-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,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자료를* 활용합니다.
 - *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,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자료
 - 구체적으로는 ①해당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②연간 과세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.

$$* \text{일평균 매출감소액('22.1월)} = \frac{\text{'19.1월 과세인프라} \times \text{'19. 현금조정}}{31} - \frac{\text{'22.1월 과세인프라} \times \text{'21. 현금조정}}{\text{'22.1월 영업일}}$$

$$** \text{N년 현금조정} = \frac{\text{해당 사업자의 N년 신고매출액 합산액}}{\text{해당 사업자의 N년 과세인프라매출액 합산액}}$$

11.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?

-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(전자지급거래액)도 과세인프라매출액*에 포함되어,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.

*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,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, 전자지급거래액

12.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?

-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, 인건비*와 임차료를 손실보상금 산정(일평균 손실액)시 반영합니다.

* 급여 + 퇴직급여 + 복리후생비 + 노무비

- 특히,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 등과 관계없이 '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을 100% 반영하였습니다.

13. 종합소득세 기장신고를 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, 영업 이익률 또는 고정비 비중이 어떻게 계산되는지?

- 영세 자영업자 등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·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.

-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「'19년 귀속 경비율 고시」를, 고정비(인건비, 임차료) 비중은 통계청의 「'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」를 활용합니다.

14. '20년 이후 개업하여 '19년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보상금 산정은?

- (일평균 매출감소액) '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,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'19년 대비 '22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, 업체별 매출 규모 등을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.
- (영업이익률 등) '19년 또는 '20년 개업자는 각각 '20년 또는 '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고, '21년* 또는 '22년 개업자는 '19년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.
 - * '21년 개업자의 경우, 개업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'21년 소득세 신고자료상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을 고려

15.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2019년으로 하는지?

-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, 코로나19 발생 이전(2019년)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- 사업자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,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.
 - 다만, '19년 이후 개업하여 '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'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
16. 보정률을 100%로 상향한 이유는?

- '21.3분기 보정률은 80%, '21.4분기 보정률은 90%였으나 소상공인 등이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'22.1분기부터 100%로 상향하였습니다.

17.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?

-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(개별 사업자등록번호)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.

18. 보상금의 상·하한액은?

-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,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.
 -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'22.1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* ('21.3분기) 10만원 → ('21.4분기) 50만원 → ('22.1분기) 100만원

19.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?

-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 -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,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.
-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^(1회)30%, ^(2회)50%, ^(3회~)100% 감액하며,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.

20.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만 바뀌었다면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?

-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업종 변경 관계없이 해당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.

21. 인건비 및 임차료에 해당하는 세부 비용 항목은?

소득세 신고유형(▲기장신고, ▲추계신고)에 따라 다릅니다.

< 신고유형별 인건비·임차료 인정 항목 >

| 신고유형 | | 인건비 인정 항목 | 임차료 인정 항목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장신고 | 복식부기장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급여 ■ 일용급여 ■ 퇴직급여 ■ 복리후생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차료 ■ 리스료 |
| | 간편장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급료 ■ 노무비 ■ 복리후생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차료 |
| 추계신고 | 기준경비율 | ■ 인건비 | ■ 임차료 |
| | 단순경비율 | 해당 없음 (단순경비율에 모두 포함) | 해당 없음 (단순경비율에 모두 포함) |

22.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?

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건비로 반영됩니다.

IV**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****23.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**

□ 6월 30일(목)부터, 전용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을 접속하거나,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① (신속보상)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(목)부터 시작합니다.

-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,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10일간(공휴일 포함) 5부제가 실시됩니다.

<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5부제 추진일정 >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날짜 | 6.30(목) | 7.1(금) | 7.2(토) | 7.3(일) | 7.4(월) |
|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| 0, 5 | 1, 6 | 2, 7 | 3, 8 | 4, 9 |
| 날짜 | 7.5(화) | 7.6(수) | 7.7(목) | 7.8(금) | 7.9(토) |
|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| 0, 5 | 1, 6 | 2, 7 | 3, 8 | 4, 9 |

-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(월)부터 22일(금)까지 첫 10일간 (공휴일 제외) 홀짝제를 운영합니다.

② (확인요청·확인보상)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(화)부터 시작되며,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(월)부터 시작됩니다.

* 신속보상 대상 미포함(확인요청) 또는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소한 경우(확인보상)

- 온라인 신청은 첫 5일간(공휴일 포함) 5부제를, 오프라인 신청은 첫 10일간(공휴일 제외) 홀짝제를 운영합니다.

< 확인요청·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5부제 추진일정 >

| 날짜 | 7.5(화) | 7.6(수) | 7.7(목) | 7.8(금) | 7.9(토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| 0, 5 | 1, 6 | 2, 7 | 3, 8 | 4, 9 |

-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,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하거나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③ (이의신청)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,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6월 30일(목)부터 지방중기청, 전국 시·군·구청,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.

○ 또한, 손실보상 콜센터(☎1533-3300)와 온라인 채팅상담(손실보상 114.kr)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24.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?

□ 신속보상은 국세청·지자체 등의 행정자료*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,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.

* (국세청) 과세자료 / (지자체)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

- 보상금 산정·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, 신청 당일~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.

□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.

-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,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25. 2020년 개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순연되는 이유는?

- '20.1.1.~'20.12.31. 개업자의 경우, 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·임차료 비중 산정 시 '21년 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 자료를 반영합니다.
- 이는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, 보다 정확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.
- '21년 과세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대로(7월 잠정),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을 산정·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26.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

-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,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의 경우, “소상공인손실보상.kr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,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.
- 오프라인의 경우,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*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
* 「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2호 서식

27.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 가능한지?

-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에서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,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
28.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, 변경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신청 가능한지?

-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사업자번호 변경 전후의 각 사업자가 이행한 방역조치 일수만큼 보상금이 산정·지급됩니다.

29. 폐업한 경우,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?

-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30.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손실보상금을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지?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는지?

- 각각의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,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마다 시행한 방역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 -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·지급합니다.

31. 법인사업자 본점과 지점의 매출규모가 다른 경우 기업규모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?

□ 신청인(법인)의 기업규모(▲소상공인, ▲소기업, ▲중기업)가 보상 요건*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에 따라 판단합니다.

*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○ 이 경우, 해당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*한 연평균매출액을 활용하므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업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.

* (법적 근거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7조제1항

□ 다만, 신청인이 가맹점인 경우에는 가맹본부(법인)와 별개인 사업체로 보아 해당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만으로 기업규모를 판단합니다.

32.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는?

- “손실보전금”의 목적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직·간접 피해 및 손실을 소급하여 보전하는 것입니다.
 - 신청인의 기업규모, 피해정도, 업종별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,000만원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.
- “손실보상금”은 손실보상 근거 법률*에 따라,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·소상공인 및 중기업(연매출 30억원 이하)의 손실을 개별 산정**하여 보상하는 청구권에 기반한 제도입니다.
 - 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 (21.7.7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적용)
 - ** 신청인의 손실액에 비례 (월별 일평균 손실액 ×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× 보정률)
 - 오는 6월 30일(목)부터 신청을 개시할 예정인 손실보상의 경우, '22.1분기 손실분에 대한 보상입니다.

33.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?

-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(☎ 1533-3300)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.
 -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30일(목)부터 한달 동안은 손실보상 상담사 1,000명, 전화회선 10,000개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.
 - 아울러, 온라인 채팅상담(www.손실보상114.kr)도 상담사 5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34.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?

- 6월 30일(목)부터 7월 15일(금)까지는 일일 4회(▲10시, ▲14시, ▲19시, ▲익일 3시) 입금해 드릴 예정이며,
 - 7월 18일(월)부터는 일일 3회(▲10시, ▲14시, ▲18시) 예정입니다.

35.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되는지?

- 입금자명은 “공단손실보상”으로 표기됩니다.

36.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할 수 있는 첨부파일 유형은 무엇인지?

- 확장자가 PDF, JPG, JPEG, PNG 등에 해당하는 파일입니다.